

월미바다열차 이용약관

제정 2019. 9. 27 약관 제12호
개정 2020. 7. 16 약관 제15호
2022. 8. 23 약관 제19호
2024. 7. 30 약관 제2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월미바다열차 운영자인 인천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합니다.)와 월미바다열차를 이용하는 이용자(이하 “고객”이라 합니다.) 간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월미바다열차 이용에 적용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 등 다른 법률을 적용하거나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개정 2024. 7. 30>

1. “할인승차권”이란 노인, 청소년, 어린이, 장애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포함) 및 인천시민 승차권을 말합니다.
2. “승차가능시간”이란 당일 이용시간 시작부터 역별 마지막 열차가 출발하는 시간까지를 말합니다.
3. “제휴승차권”이란 특정단체 등과 할인율을 협의하여 발행한 승차권을 말합니다.

제4조(고객동의) 고객은 공사 또는 공사가 승인한 다른 단체에서 판매한 승차권을 구입한 때에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약관의 비치) 공사는 이 약관을 역 또는 홈페이지 등 고객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거나 게시합니다.

제6조(약관의 변경) 이 약관은 관련법령이나 서비스 개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7조(운행중단) 기상여건이나 시설장애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차량의 운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8조(금지행위 및 승차거절 <개정 2020. 7. 16>) ① 고객은 궤도운송법 제28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됩니다.

1. 다른 고객에게 위해 또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화약류·동물 등을 차량 내에 들여 놓는 행위
2. 운행 중인 차량 내에서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신체를 차량 밖으로 내놓는 행위
4. 그 밖에 월미바다열차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공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승차를 거절하거나 이용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0. 7. 16>

1. 제1항에서 정함 금지행위를 한 고객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고객

제2장 이용조건

제9조(이용요금) ① 이용요금은 별표와 같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이용시간) ①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2024. 7. 30>

구 분		이용시간	비 고
4월 ~ 10월	주 말(금.토.일 및 공휴일)	10:00~19:00	정기휴일 : 매주 월요일
	주 중(화.수.목)	10:00~18:00	
11월 ~ 3월		10:00~18: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서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단체승차권 판매) 20명 이상의 고객이 동일한 시간대에 같은 구간 및 경로를 이용하기 위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보호자가 단체승차권 판매를 신청하고,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제12조(재승차) 승차권을 갖고 있는 고객은 당일 승차가능시간에 한하여 1회까지 다시 승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차권을 소지하고 월미관광특구 내 상업시설을 이용한 당일 영수증을 지참한 경우 평일에 한해 추가 승차가 가능합니다. <개정 2022. 8. 23> <단서신설 2024. 7. 30>

제12조의2(승차권 무효 및 부가금) ①고객이 소지한 승차권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효로 합니다.

1. 요금할인 대상이 아닌 고객이 할인승차권을 사용한 때
2. 위조 또는 변조된 승차권을 사용한 때
3. 사용기간이 지난 승차권을 사용한 때
4. 할인승차권을 사용하는 고객이 제13조에서 정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직원의 신분증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은 때
5.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용이 개시된 승차권을 받거나 구입하여 사용한 때
6. 그 밖에 요금을 할인받거나 내지 않을 목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때

②고객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이용요금과 그 10배의 부가금을 받습니다.

1.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개표하지 않고 운임적용지역(게이트 안 쪽)에 입장한 때
2. 승차권 검사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승차권에 기재된 인원을 초과하여 승차한 때, 그 초과인원
4. 제1항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승차권을 무효로 한 때

제13조(신분증명서 소지) ① 할인승차권을 사용하는 고객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직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내보여야 합니다. <개정 2024. 7. 30>

가. 청소년 : 청소년증, 학생증 등 나이 또는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나. 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다.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라.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이 표시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증

마.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바.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장해등급이 표시되어 있는 5·18민주유공자증(광주민주유공자증 포함)

사. 인천시민 : 지역거주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주민등록등본 등

② 할인승차권 사용에 맞는 신분증명서를 갖고 있지 아니한 고객이나 직원의 신분증명서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고객은 할인승차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4조(승차권 분실) 고객이 승차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요금 환불) ① 공사는 고객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승차권을 구매 당일

각 역에 제출하여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요금을 환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의 운행중단이 발생된 때에는 사용 중인 승차권이 라도 고객이 구매당일 승차권을 각 역에 제출하여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환불합니다.

③ 모든 할인은 중복 적용 불가하며 차액 발생을 이유로 환불하지 않습니다. <신설 2024. 7. 30>

제3장 휴대품 등

제16조(휴대품 확인) 공사는 고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대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17조(고객 책임) 고객의 고의나 과실 또는 이 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공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7. 30>

이 약관은 202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4. 7. 30>

이 용 요 금

(제9조 관련)

구 분			어 른	노 인 · 청 소 년	어 린 이	장 애 인 · 유 공 자
인천 시민	평일. 주말	일 반	8,000원	6,000원	5,000원	4,000원
		단 체	7,000원	5,000원	4,000원	4,000원
일반	평일	일 반	11,000원	8,000원	7,000원	6,000원
		단 체	9,000원	6,000원	5,000원	5,000원
	주말	일 반	14,000원	10,000원	8,000원	7,000원
		단 체	12,000원	8,000원	6,000원	6,000원
제휴	평일	※ 평일기준 20~50% 할인, 제휴상품 이용 인원 10명당 인솔자 1명 무료				

1. 어 른 : 만19세 ~ 만64세
2. 노 인 : 만65세 이상
3. 청 소 년 : 만13세 ~ 만18세
4. 어 린 이 : 만3세 ~ 만12세. 만3세 미만 유아는 요금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자 1인이 유아 3인을 초과하여 동반한 때 그 초과한 유아는 어린이 요금을 받습니다.
5. 장 애 인 :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장애등급 1~3급의 경우 같은 구간을 동행하는 보호자 1인
6. 국 가 유 공 자 등
 - 가. 국 가 유 공 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상이등급 1급의 경우 같은 구간을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나. 독 립 유 공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애국지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같은 구간을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등급 1급의 경우 같은 구간을 동행하는 보호자 1인

7. 인천시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지역거주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인정된 자